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정성국・이헌승・백종헌

곽규택 · 김희정 · 김대식

이성권 · 서지영 · 서범수

서천호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 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문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크 게 위축되고 있음.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체험학습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학여행, 수련 활동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현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우려 가 있음.

이에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

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장 및 교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형 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
리 지침 등) ① ~ ④ (생 략)	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학교장 및 교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u>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u>
	<u>아니한다.</u>